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5. 5.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4월 25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5년 5월 6일

제1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가. 제안이유

2005년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었기 새로이 개정된 재산세 규정 과 임대주택 관련 감면규정 등의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산세 개정 관련 (안 제2조 국가유공자 감면 외 10개)
 - 세목 중 종합토지세 세목 삭제
 - 종합토지세 과표관련 규정 삭제
-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감면 범위 확대 (안 제9조)
 - ※ 건설임대(1항)과 매입임대(2항) 별도규정
 - 건설임대 : 60~149㎡까지 감면확대(재산세 25%감면)
 - 매입임대 : 60~85㎡까지 감면확대(재산세 25%감면)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10조)
 - 3년간 1,000분의 3 → 3년간 1,000분의 1.5
-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22조)
 - 1,000분의 3 → 1,000분의 1.5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9조
 - 서울특별시 세제과 - 2101(2005. 3. 3) 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専門委員の 検討報告 要旨 (専門委員 김찬재)

-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2005.3.3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 시달됨에 따른 적절한 조문개정으로 사료되며,
- 다만, 안 제15조 제2항에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면제토록 함은
 -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부응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사업추진결과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재산세까지 감면하면 지나친 배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16조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라고 정하여, 감면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審査結果：原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7
----------	-----

제출연월일 : 2005.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05년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었기 새로이 개정된 재산세 규정 과 임대주택 관련 감면규정 등의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개정 관련 (안 제2조 국가유공자 감면 외 10개)

- 세목 중 종합토지세 세목 삭제
- 종합토지세 과표관련 규정 삭제

나.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감면 범위 확대 (안 제9조)

※ 전설임대(1항)과 매입임대(2항) 별도규정

- 전설임대 : 60~149㎡까지 감면확대(재산세 25%감면)
- 매입임대 : 60~85㎡까지 감면확대(재산세 25%감면)

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10조)

- 3년간 1,000분의 3 → 3년간 1,000분의 1.5

라.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22조)

- 1,000분의 3 → 1,000분의 1.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9조

○ 서울특별시 세제과 - 2101(2005. 3. 3) 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공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05.3.15 ~ 2005.4.3):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03.10.17 시달)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6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

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①「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 제 시행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면제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 종합

지원 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영등포구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영등포구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제산을 취득한 날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23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감면내용	세목	연도/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감면사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 제 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